

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2-10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7 .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개정이유

- 2002. 7. 1부터 국가사무인 병무업무위임제도의 폐지로 관련 업무가 국가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김제시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중 병무관련 업무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징·소집 및 징병검사에 관한 규정 삭제 (안 제5조제2항제39호)
- 병력동원 집행계획 및 향토예비군 편성에 관한 규정 삭제(안 제5조제2항제40호)

3. 참고사항

- 병무사무 위임폐지에 따른 정원조정지침 통보
[도행정 12200 - 19 (2002. 6. 27)호]
- 입법예고
- 기 간 : 2002. 6. 14 ~ 7. 4 (20일간)
- 결 과 : 의견개진사항 없음

김제시조례 제 호

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39호 및 제40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제5조(자치행정국에 두는 과) ①~②(생략) 1. ~ 38. (생략) 39. <u>징집·소집 및 징병검사</u> 40. <u>병력동원 집행계획 및 향토예비군</u> <u>편성</u> 41. ~ 161. (생략)	제5조(자치행정국에 두는 과) ①~②(현행과같음) 1. ~ 38. (현행과 같음) 39. < 삭제 > 40. < 삭제 > 41. ~ 161. (현행과 같음)

김 제 시

우 : 576-120 김제시 서암동 353번지 / 전화 (063)540-3109 / 전송 540-3486
 총무과 과장 : 정창섭 서무담당 : 손길호 담당자 : 나경득

문서번호 행정 12200 - 919
 시행일자 2002. 7. 5. (년)
 경 유
 수 신 내 부 결 재
 참 조

보존기간		시 장
공개여부		
부시장		
국 장	전 결	
과 장	정 창 섭	
기안자	* 나 경 득	서무담당 손길호
심사자		협 조
		심 사 일

제 목 :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결과 보고

총무 12200 - 770(2002. 6. 4)호와 관련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- 가. 입법예고일시 : 2002. 6. 15
- 나. 입법예고내용 : 김제시공고 제2002 - 173호
 - 김제시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의 의견수렴
- 다. 입법예고기간 : 2002. 6. 15 ~ 2002. 7. 4(20일간)
- 라. 의견수렴결과 : 의견개진사항 없음. 끝